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3.06.07 개정)
1.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013.06.07 개정)
 2. 제9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2018.12.31 개정)
 3. 제21조 [재화의 수출] 제2항 제3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 (2018.12.31 신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생산·취득재화의 사용 또는 소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014.01.01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5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 사용 또는 소비하거나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것 (2014.01.01 개정)
 2.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그 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재화를 해당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2014.01.01 개정)
- ③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제8조 [사업자등록]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2013.06.07 개정)
 2. 사업자가 제51조 [주사업장 총괄 납부]에 따라 주사업장 총괄 납부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다만, 제32조 [세금계산서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또는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3.06.07 개정)
- ④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비하거나 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자가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으로 정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8.12.31 후단신설]
-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 · 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0조)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3.06.07 개정]
-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 · 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사업자등록]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2013.06.07 개정)
- ⑦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 ⑧ **삭제(2020.12.22)**
1. 삭제(2020.12.22) 2. 삭제(2020.12.22)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2017.12.19 항번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대리납부]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01.01 단서신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4.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7.12.19 신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017.12.19 신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12.19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01.0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2013.06.07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2013.06.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 · 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2015.02.03 제목개정)]
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제2항 제2호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2014.02.21 개정)

1. 운수업(2013.06.28 개정)
2. 자동차 판매업(2013.06.28 개정)
3. 자동차 임대업(2013.06.28 개정)
4. 운전학원업(2013.06.28 개정)
5.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이 경우 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서의 자동차는 「경비업법」 제16조의3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015.02.03 개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2015.02.03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2019.02.12 신설)]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것은 시가와 받은 대가의 차액에 한정한다.(2019.02.12 신설)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019.02.12 신설)
2.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2019.02.12 신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2020.10.07 개정)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2020.10.07 개정]

나. 설날 ·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된 재화 [2020.10.07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사업을 위한 종여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의 범위]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종여하는 것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견본품 [2013.06.28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2013.06.28 개정)
3.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으로만 전부를 결제받고 공급하는 재화(2018.02.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 또는 재화의 특성상 또는 보관 · 관리상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의2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2021.02.17 삭제)]

삭제(2021.02.1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018.02.13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2호 분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2009.12.31 제목개정)] 제2항 또는

제47조(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2009.12.31 제목개정))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2018.02.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06.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06.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의 범위]]으로 정하는 것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제9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2019.02.1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2013.06.28 개정)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른 자산(2013.06.28 개정)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2013.06.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2011.06.03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2008.02.29 직제개정)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02.29 직제개정)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02.29 직제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1998.12.31 개정)

가. 서화 및 골동품. 다만, 장식 · 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02.19 단서개정)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 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2000.03.09 제목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 ·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8.02.29 직제개정)

다. 기타 가목 및 나목의 자산과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 (1998.12.31 개정)

광고선전비

1-62.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라 함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적으로 상품이나 제품의 판매촉진의 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이미지 제고 목적의 광고 및 홍보를 포함한다.

11-63. 광고선전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광고선전비도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그 지급할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이 일차적으로 귀속사업연도가 될 것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거 광고선전이 시행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광고선전은 그 성격상 광고매체에 따라 그 광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시기가 각각 상이할 수 있으며,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성냥·수건 등의 광고선전용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당해 물품을 타인에게 인도한 날
신문·플래카드 및 인쇄물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광고선전이 시행된 시기, 즉 그 광고가 독자나 청취자에게 전달된 때(이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신문게재일 또는 방송일 등이 될 것임)
광고탑, 네온사인 등 물적 시설물의 경우처럼 광고선전효과가 장기적으로 실현되는 경우	그 구축물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때

- 광고선전은 당해 제품 또는 상품 등이 판매되거나 판매될 때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그 광고선전이 시행된 시기에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국심 82부1643, 1982.11.27)
- 이미 완성하여 분양·임대할 건물과 미완성건물에 대한 광고선전을 신문·텔레비전을 통하여 함께 한 경우 그 광고의 효과는 일시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미완성건물에 대한 광고선전비를 안분계산하여 손금불산입하는 처분은 부당함.(국심 82부1634, 1982.11.27)

11-64.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지출한 것인지 여부

광고선전비는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특정인 또는 특정고객만을 위한 것이라면 11-65.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이때 불특정다수인이란 당초의 광고 의도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법인제품 또는 상품의 소비자인 한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광고효과가 전달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자를 추첨 등의 방식에 의하여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당초에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패션쇼를 개최하면서 소요된 음료대등 연회비가 광고선전비이냐 또는 접대비이냐는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것임.(법인 22601-3131, 1987.11.25)
- 전국대리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전광고를 통하여 차별 없이 배포한 파일노트의 제작비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함.(국심 86서2113, 1987.2.24)

주) 지출상대방 등에 따른 광고선전비의 유형 및 접대비와의 구분에 대하여는 16-7.이하 참조

11-65. 견본품·증정품·사은품·경품 등을 제공한 경우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法令 19·18)

이에 따라 통상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무상제공하는 경우 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특정인 여부에 관계없이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고, 개당 10,000원을 초과하는 물품은 특정인의 경우 연간 3만원 이내, 불특정다수인에게는 한도 없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주)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물품가액에 대하여 별도로 접대비 해당 여부를 가리지 않고 손금 용인한다는 의미이며, 이외에 현물로 제공되는 광고선전물품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제공물품에 최소한 법인의 상표나 상호 등이 명시되어 특정 법인의 광고선전물품임이 확인되고 둘째, 당해 물품의 가액이 통상의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특정인일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 관련사례

[1] 견본품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 수출목적으로 외국거래선에게 견본을 무상으로 송부한 것이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품의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된 모델의상제작비 또는 샘플복제작비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하는 견본품의 가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심사 83중1878, 1983.12.21)

○ 부엌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회사의 승낙아래 아파트분양용 모델하우스내에 견본제품을 자기계산과 책임하에 설치·전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폐기손실 등의 비용(당해 자산의 소유권을 건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서 손금산입함.
(서이 46012-12169, 2002.12.4 및 서이-1450, 2006.7.31)

[2] 퀴즈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상품판매법인이 일간신문에 상품광고와 함께 퀴즈문제를 게재한 후 퀴즈당첨자에게 제공하는 경품가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광고선전비로 봄.(법인 46012-2885, 1997.11.7)

[3] 반품재고 또는 불량재고 등을 무료배포하는 경우

○ 법인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선전효과를 목적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책자를 배포하는 경우 그 책자의 장부가액은 광고선전비로 봄.(법인 22601- 673, 1983.2.27)

○ 월간지를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판매기간이 종료되어 반품된 것을 당해 월간지의 홍보목적으로 사무용빌딩 등을 직접 방문하여 불특정다수의 구독대상자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에 그 수량이 당해 업종의 관행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료배포한 월간지의 재고자산가액을 광고선전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 46012-486, 1998.2.26)

▣ 소액 광고선전비에 대한 적용례

2009.2.4 시행령 개정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8호를 신설하여 법인이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물품 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물품을 기증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구입비용은 손금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여 소액 광고선전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9.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대통령령 제21302호 부칙 5, 2009.2.4)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에 대해 다음의 경우 접대비로 보지 않음 (法令42⑤, 2009.2.4 삭제전)</p> <p>* 견본품, 달력, 수첩, 부채, 캡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 특정인에게 기증하기 위해 지출 (연간 3만원 한도) 	<p><input type="checkbox"/> 기업이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손비 인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의 비용은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손비 인정 - 5,000원 이하의 물품 제공시 3만원 한도 적용 않음.

그러나 2012.2.2 시행령 개정시 3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소액 물품의 개당 단가를 종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이는 2012.1.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대통령령 제23589호 부칙 6, 2012.2.2)

11-66. 거래처에 광고선전용 자산을 기증한 경우

맥주·커피·담배 등의 제조회사가 자사제품을 취급하는 거래처에 거래처의 상호 및 제조회사명과 제품 등을 같이 표시한 간판 등을 기증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로고·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광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法基通 15-11...4)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업용자산과 자산수증액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 주)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설치기간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치계약기간 동안 안분한 금액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것임.(법인 46012-1243, 1997.5.3)

○ 법인과 대리점간의 대리점계약서에 의하여 법인이 판촉물을 공급하고 소요비용의 일정률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매년 계절별로 신상품의 출하시 구매자사은행사에 관한 기간,
사은품목, 중정대상, 행사매장, 판촉물 발주수량, 단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내부품의를 받아 판촉물을 제작하여 직전계절의 매출실적이나 매출목표,
각 대리점에서의 비용부담률 등을 감안하여 대리점에 배분하고 동 계획이 수행되기 전에 텔레비전, 현수막, 팝플렛, 전단배포 등을 통하여 사전에 사은행사내용을
전국적으로 불특정다수인을 홍보하며 우산, 비취백 등 판촉물에는 법인의 상표 및 신제품현황만 게재되고 대리점에 대한 광고내용 등이 없는 점에서
판촉물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로 볼 수 없음.(국심 95서2337, 1996.1.6)

○ 법인과 대리점간의 계약서에 의하여 대리점들의 판촉활동을 위하여 전시용품의 진열 등을 기획하여 설치하며 그 설치비용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면 전시용품을
설치하는 목적이 잠재고객의 구매의욕을 촉진하며 기업의 홍보 및 상품의 이미지를 높이는 데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비록 그 설치장소가 대리점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직접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홍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며 접대비로 볼 수 없음.(국심 95서2337, 1996.1.6)

11-67.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한 경우

중전에는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의 효과를 감안하여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하였다.
(法基通 2-3-35...9, 2001.11.1 삭제전)

그러나 1998.12.28 법인세법 전면개정시 공통경비의 부인규정을 신설하면서 법인이 당해 법인 외의 자간에 공동으로 행한 광고선전비에 대하여는 일정한 배분기준에 따라 법인간에 배분할 것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13-18. 이하를 참조한다.

따라서 2 이상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활동을 함으로써 발생한 공동광고선전비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인 46012-368, 2000.2.9)

주) 특정법인의 매출이 증대하면 반사적으로 당해 법인에 납품하는 법인의 매출액도 증가하는 연쇄효과가 있는 법인간에 특정법인의 광고선전비 중 일부를 납품업체에 분담시키는 경우 당해 분담액을 공동 광고선전비로 보아 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할 것은 아니며, 그 지출성격에 따라 납품업체의 판매부대비용이나 접대비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임.

11-68. 해외브랜드의 국제광고비를 공동분담하는 경우

스포츠용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같은 제품을 취득하는 해외의 관련회사와 동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하는 경우로서 동 약정에 의한 분담액이 매출액, 시장규모 등을 비교하여 볼 때 광고선전의 효과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분담한 금액은 전액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 46012-3225, 1997.12.11)

예를 들어, 스포츠의류에 대한 세계적인 상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국내자회사로서 국내에서 동 제품의 도·소매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 해외그룹의 홍보담당 관계회사가 유명테니스선수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광고선전을 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속계약료, 광고선전물 제작비용, 용품지원비용 등을 배부받아 분담하는 비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11-69. 프로야구단의 지원금을 계열기업군이 분담하는 경우

프로야구단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 프로야구단에 지출하는 금전 중 광고선전비의 성질이 있는 부분은 전액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프로야구단의 결손금(기업지원금의 익금산입전 금액을 말함)의 보전을 목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그 지원금의 합계액 중 당해 프로야구단의 결손금범위 내의 금액을, 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세 1264-265, 1982.2.26 및 재무부 소득 1264-1280, 1984.12.3)

이때 출자관계란 지분비율이나 직접 출자여부에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총칭한다.(법인 1264.21-2626, 1982.8.12)

그리고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이란 법인세법상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말하므로 지원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 세무조정 후의 결손금이 되며 이월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 22601-2846, 1987.10.24) 또한 프로야구단이 프로야구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프로야구단의 결손금은 순수 프로야구사업부분의 결손금을 말하며, 기타 사업의 결손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재경원 법인 46012-102, 1997.9.27)

이 경우 프로구단에 대한 지원금도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간 공동광고비로서 13-18.에서 정하는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1-70. 휘장 및 마크사용대가를 지출한 경우

법인이 올림픽대회의 공식휘장 및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 대가로 조직위원회의 상품·제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동 무상공급물품의 가액(공급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포함)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손금에 산입한다.(법인 22601-1252, 1986.4.21)

1.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2개 사업연도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분할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처리
2. 계약내용에 따라 물품을 1개 사업연도에 공급을 완료하고 휘장 및 마크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시에 전액 선금비용으로 처리한 후

* 공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

총 공급가액 × 계약개시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월수 / 총계약기간의 월수

*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 = 총 공급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 총계약기간의 월수

이러한 처리는 이와 유사한 공식행사 및 경기의 스폰서계약 등에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11-71. 광고시설물 및 매장진열품에 대한 감가상각비 처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각자의 상호 등이 포함된 입간판 또는 아크릴간판 등을 공동부담으로 제작한 경우에는 비품계정으로 처리한 후 각자 부담분에 대하여 각각 감가상각할 수 있다.(法基通 23-24...7)

아울러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네온사인, 광고탑 등의 광고용 시설물의 감가상각비(상각범위액 내의 금액)도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가전제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PDP(벽걸이 TV), 노트 PC 등을 매장 내에 제품의 동작상태 및 성능테스트를 위해 주변장치를 설치하거나, 고객휴식을 위한 인터넷 카페 코너를 만들어 PC를 설치하는 경우, PDP 구매촉진을 위해 PDP 체험관을 만들어 영상 및 음향효과를 고객이 직접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PDP를 설치하는 등 광고선전 등의 목적으로 진열·설치하여 전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은 광고선전비로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이-14, 2006.1.5 및 서이-699, 2006.4.28)

11-72. 관련사례

[1] 무료이용권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시식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함.
(서이-1711, 2004.8.17)

[2] 자사제품 및 상표의 독점사용권대가

-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외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 지정 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 46012-1684, 1999.5.4)
- 판매촉진의 일환으로 자사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사전약정에 의하여 각종 체육단체, 협회, 프로.아마선수 및 기타 경기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를 필히 착용토록 약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공급분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는 조건인 경우 당해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법인 22601-1387, 1990.7.2)

[3] 협찬품

법인이 자사제품, 상품 및 용역 등의 판매 또는 공급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방송과정에서 당해 법인이 협찬사임이 표시되는 조건으로 방송국의 특정 텔레비전 드라마 제작에 필요한 실내장식을 자사제품으로 무상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법인 46012-2322, 1997.9.2)